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제정 2002. 12. 09. 고성군 고시 제2002-69호
개정 2003. 06. 18. 고성군 고시 제2003-39호
개정 2006. 01. 27. 고성군 고시 제2006-42호
개정 2007. 04. 19. 고성군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13. 10. 28. 고성군 고시 제2013-80호
개정 2016. 02. 03. 고성군 고시 제2016-09호
개정 2016. 06. 29. 고성군 고시 제2016-58호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6. 29.

고 성 군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 운항과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자(선원포함) 및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영업시간)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다.

제 4 조(영업구역) 낙시어선의 제한구역은 북위 38°33'이상으로 하되, 영업해역은 육지해안선으로부터 연안 7마일까지로 한다. 단, 2톤 미만 선외기 설치 낙시어선은 육지해안선으로부터 연안 3마일까지로 한다.

제 5 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유어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한다.
2. 낚시어선에 승선한 선원 및 승객 전원에게 영업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용 거부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3.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갯바위 및 간출암, 무인도서 등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4. 승객의 위급한 상황 및 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낚시어선업자(선원포함)는 출항 전 항해·통신·기관·추진 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낚시어선의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3.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한다.
5.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 6 조(기타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킨 후 출항하여야 한다.

1. 낚시 어선의 승객은 안전운항 등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낚시 승객은 선상에서 낚시 중 기상악화 예견 등으로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의 안전대피를 위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요구하는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거짓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에게 정확한 작성을 요구하고 허위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선원은 승선하려는 낚시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자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5. 낚시승객은 승선자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한 고시 제2013-80호 「낚시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는 폐지한다.